

제341회 제1차 임시회
제1차 교육위원회
2023. 8. 30.(수)

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
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337
발의일자	2023. 8. 17.
회부일자	2023. 8. 22.



교 육 위 원 회
(수석전문위원 장중찬)

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차주식 의원 외 28명

2. 제정이유

- 경상북도 각급 학교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내 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교육감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바.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에 대한 신고 체계 마련(안 제7조)
- 사.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하기 위하여 시책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아.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, 안 제10조)

4. 관련법령

- 「유아교육법」
- 「초·중등교육법」
- 「평생교육법」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
5. 입법예고 결과: 의견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

- 가. 규제심사: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- 나. 부패영향평가: 부패 유발요인 없음
- 다. 성별영향평가: 해당없음
- 라. 해당부서의견: 일부 반영(의견 불임)
- 마. 예산조치: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수반 요인 없음

7. 검토의견

가. 제안취지

-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각급 학교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내 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등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
-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
- 안 제3조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시책 마련 책무를 규정함
- 안 제4조는 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안 제5조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 마련을 규정함
- 안 제6조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
- 안 제7조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등을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8조는 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9조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및 제작·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각급학교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행정

기관의 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 시책 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,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 추진계획 수립, 화장실 설치기준 마련, 상시점검체계 구축과 불법촬영 신고체계 마련, 실태조사 및 교육,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 학생 및 교직원이 화장실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- 또한, 최근 학교 여자 화장실, 샤워실 등에서 불법 촬영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불법촬영 예방대책을 화장실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불법촬영의 위험이 높은 취약장소로 확대하는 것은, 학생 및 교직원이 화장실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.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상북도 각급 학교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내 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상북도 각급 학교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내 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등의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- 교육감 소속이라는 명칭보다 교육청 소속의 행정기관이라는 명칭이 적합하다고 봄
- '화장실의 이용'을 제명과 일치시켜 '화장실 등의 이용'을 도모로 수정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,3,4. 생략

2. “불법촬영”이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.

안

2. “불법촬영”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.

- 관련법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 불법촬영의 (정의)를 설명하는 것이 조례 제정 목적이 잘 드러남

제5조(안심보안관) ① 교육감은 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로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안

제5조(안심보안관) 삭제

- 제4조(추진계획 등) ①의1.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으로 생각됨

제7조(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)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

③ 상시점검은 상·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.

안

제7조(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) 삭제

- 제4조(추진계획 등) ①의1.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 중복

제9조(실태조사)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안

제9조(실태조사)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

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-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수정

10조(교육)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및 촬영물 제작·유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안

제10조(교육) 삭제

- 제4조(추진계획 등) ② 제2항의 3.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·유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중복